

의안번호	제 80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9. 30. (제 44 회)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23.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년월일 : 1999. 7. 23.
제출자 : 서산시장

개정이유

-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도의 표준화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며,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산업건설국의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폐합하여 농림과를 신설함(안 제6조).
- 도의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안에 의하여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
-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대강의 사무로 규정함(안 제15조).
- “통·반운영조직,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로 하고, 별표 4를 삭제함(안 제17조).

□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장자치법 제102조,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충청남도 행정 12200-1726('99. 6. 15)호

○ 기구조정 현황

구분	국	과·담당관	농업기술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의회	
							국	회
현행	2	17과 (71담당)	2과 (8담당)	2과 (8담당)	4 (9담당)	15 (46담당)	국	1
							담당	2
조정	2	16과 (71담당)	2과 (8담당)	2과 (8담당)	4 (9담당)	15 (46담당)	국	1
							담당	2
증감	·	△1과	·	·	·	·	국	·
							담당	·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 조제목 및 제5조제1항중 “총무국”을 각각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건설국에 농림과, 축산해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제6조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식수 및 보호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개발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회관

가. 문화회관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문화회관의 이용 및 자체기획한 공연·전시회·초대전 등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다.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문화회관에 관련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

가. 사업소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와 관련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상·하수도 대행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마. 광역상수도 관련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도수·급수·배수관 및 저수조등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개발공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수의 생산·공급과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집·정리·보존 및 사회일반 사람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및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종합사회복지관

가. 복지관내 소관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라. 노인·청소년·아동·장애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중 “통·반운영조직,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서산시제2의견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를 “행정지원국장·산업건설국장·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 하며, 동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⑤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세무과장·산업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건축과장·수도과장·지적과장”을 “세무과장·지적과장·농림과장·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4】 <삭 제>

읍·면·동장의 관장사무

(제17조 관련)

읍·면·동장	분 야	관 장 사 무
대산읍장	총무분야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일반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진흥분야	새마을사업종합추진, 농로개설, 광고물, 체육, 소도읍 가꾸기, 전국토공원화운동, 시설물관리
	재무분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 각종사용료부과·징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일반, 환경, 자연보호, 가정복지, 보건위생, 취로사업,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
	도시분야	개별지가조사, 도시계획및도시환경, 시가지계획및구획정리사업, 주택건설및건축사, 건설업자단속, 건축허가및무허가건물단속, 농어촌주택개량및취락구조개선사업
	호병분야	호적, 병사,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방위, 향토예비군
	산업분야	지역경제, 농업, 농사의개량발달을위한연구, 잠업, 식량, 농지, 농지개량, 수리, 농산물유통관리, 수산, 산림, 수렵, 교통
	건설분야	도로, 교량, 하천, 중기, 자연재해방지대책
부석면장 해미면장	총무분야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일반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체육
	재무분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 각종사용료부과·징수
	복지분야	사회복지일반, 보건위생, 환경, 가정복지, 취로사업
	호병분야	호적, 병사,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방위, 향토예비군
	산업개발분야	지역경제, 농업, 농사의개량발달을위한연구, 잠업, 식량, 농지, 농지개량, 수리, 농산물유통관리, 산림, 수렵, 도로, 교량, 하천, 중기, 자연재해방지대책, 교통

읍·면·동	분 야	관 장 사 무
인지면장 팔봉면장 지곡면장 성연면장 음암면장 운산면장 고북면장	총무분야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일반공무원의 교양과복리, 사회복지일반, 보건위생, 가정복지, 환경, 새마을종합추진, 농로개설, 자연보호, 광고물, 전국토 공원화운동, 시설물관리, 체육, 주택
	재무분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 각종사용료부과·징수
	호병분야	호적, 병사,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방위, 향토예비군
	산업분야	지역경제, 농업, 농사의개량발달을위한연구, 잠업, 식량, 농지, 농지개량, 수리, 농산물유통관리, 수산, 산림, 수렵, 교통
부춘동장 동문동장 활성동장 수석동장 석남동장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체육, 일반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세무(지방세, 세외수입), 주민등록, 제증명, 인감, 병사, 민방위, 개별공시지가, 산업, 산림, 축산, 교통, 지역경제, 사회진흥,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건축, 건설, 도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자연보호, 광고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총무국 및 산업건설국</u>을 둔다.</p>	<p>제3조(국의 설치) ----- ----- <u>행정지원국</u> ----- -----</p>
<p>제5조(<u>총무국에 두는 과</u>) ①<u>총무국에</u>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u>총무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p>	<p>제5조(<u>행정지원국에 두는 과</u>) ①<u>행정지원국</u>----- ----- ----- ②<u>행정지원국장</u>----- 1. ~ 12. (현행과 같음)</p>
<p>제6조(<u>산업건설국에 두는 과</u>) ①<u>산업건설국에</u> 산업과, 축산해양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②<u>산업건설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u>축산 및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u> 4. <u>산림행정, 산림보호 및 녹지업무에 관한 사항</u> 5. ~ 7. (생략) 8. <u>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9. ~ 10. (생략)</p>	<p>제6조(<u>산업건설국에 두는 과</u>) ①<u>산업건설국에</u> 농림과, 축산해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u>산림식수 및 보호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삭제)</u> 5. ~ 7. (현행과 같음) 8. <u>도시계획·개발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u> 9. ~ 1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문화회관</p> <p>1. 관리분야</p> <p>가. 문화회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p> <p>나.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p> <p>다. 문화회관 시설의 임대 및 사 용허가</p> <p>라. 문화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수 납</p> <p>마. 입장권 검인 및 매표관리</p> <p>바. 자체기획한 공연·전시회·초 대전 등 시민의 문화복지증진 사업</p> <p>사. 청사방호</p> <p>아. 일반사무 및 예산운용</p> <p>자.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p> <p>2. 운영분야</p> <p>가. 조명, 음향, 영상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p> <p>나. 전기, 기계, 시설관리(무대, 냉·난방시설)</p>	<p>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문화회관</p> <p>가. 문화회관내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나. 문화회관의 이용 및 자체기 획한 공연·전시회·초대전 등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다.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의 유 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라. 기타 문화회관에 관련한 업 무전반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②상하수도사업소</p> <p>1. 업무분야</p> <p>가. 사업소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p> <p>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p> <p>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p> <p>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사</p> <p>사. 보조금 및 교부금등 수입정리</p> <p>아. 지방채</p> <p>자. 공사계약</p> <p>차. 소내 인사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p> <p>카. 문서, 관인, 보안관리</p> <p>타. 상·하수도 통계작성</p> <p>파. 상·하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p> <p>하. 수도계량기 유지·관리</p> <p>거.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너. 읍·면·동 상수도 인력, 요금, 기타 관계 관리감독</p> <p>더. 사업소내 타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급수분야</p> <p>가. 상수도사업 종합계획</p> <p>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p>	<p>2. 상하수도사업소</p> <p>가. 사업소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나. 상·하수도와 관련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상·하수도 대행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라.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마. 광역상수도 관련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바. 도수·급수·배수관 및 저수조등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개발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아.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자. 정수의 생산·공급과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차. 기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다.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 및 시설관리</p> <p>라. 광역상수도 관련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p> <p>마. 간이상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p> <p>바. 간이상수도 수질관리</p> <p>사.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p> <p>아. 급수시설공사 시행승인 및 지도·감독</p> <p>자. 도수·급수·배수관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p> <p>차. 저수조 관리</p> <p>카. 중수도에 관한 업무</p> <p>타. 전용상수도 인가</p> <p>파. 읍·면·동 상수도 급·배수관로 관계 관리·감독</p> <p>3. 하수분야</p> <p>가. 하수도시설 종합계획</p> <p>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발공사 및 관리</p> <p>다. 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교환업무</p> <p>라.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p> <p>마. 하수도 시설 및 개발공사의 시행</p> <p>바. 시설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p> <p>사. 읍·면·동 하수도 관련업무 지도·감독</p>	

현 행	개 정 안
<p>4. 시험분야</p> <p>가. 시설경계 및 경비</p> <p>나. 정수의 생산·공급</p> <p>다.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p> <p>라. 정수약품 관리 및 품질 시험</p> <p>마. 기타 수질시험과 관련된 업무</p> <p>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p> <p>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p> <p>아. 수원지 시설 환경정비 등</p> <p>자. 각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등 관리운영</p> <p>차. 수원지 시설물, 공작물 개량 및 유지관리</p> <p>카. 읍·면·동 취·정수시설 및 수질시험관계 관리·감독</p> <p>③시립도서관</p> <p>1. 도서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에 관한 사항</p> <p>2.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 집·정리·보존 및 사회일반 사람 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p> <p>3. 사회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 보제공에 관한 사항</p> <p>4.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수납· 관리에 관한 사항</p> <p>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p>	<p>3. 시립도서관</p> <p>가. 도서관내 소관업무의 종합기 획 및 조정 에 관한 사항</p> <p>나.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집·정리·보존 및 사회일반 사람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p> <p>다.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p> <p>라.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 행에 필요한 업무 및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6. <u>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u></p> <p>7. <u>지역 문화예술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u></p> <p>8. <u>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및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u></p> <p>④ <u>종합사회복지관</u></p> <p>1. <u>서무분야</u></p> <p>가. <u>복지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나. <u>복지관내 예산·회계운용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u></p> <p>다. <u>복지관내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u></p> <p>라. <u>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 및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p> <p>리. <u>기타 타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p> <p>2. <u>복지1분야</u></p> <p>가. <u>가정·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p> <p>나. <u>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u></p> <p>다. <u>부녀복지에 관한 사항</u></p>	<p>4. <u>종합사회복지관</u></p> <p>가. <u>복지관내 소관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나. <u>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다. <u>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u></p> <p>라. <u>노인·청소년·아동·장애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u></p> <p>마. <u>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3. 복지2분야</p> <p>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p> <p>제1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운영조직,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다.</p>	<p>제17조(직무) -----</p> <p>-----</p> <p>-----</p> <p>-----</p> <p>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다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u>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 ⑤ (생략)</p>	<p>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행정지원국장</u> -----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제7조(간사,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u>총무국장</u>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p>	<p>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제7조(간사,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행정지원국장</u>----- -----</p>
<p>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u>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 국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행정지원국장</u>----- ----- ----- ----- -----</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생 략)</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u>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④ (생 략)</p> <p>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가정복지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가정복지계장</u>으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행정지원국장·산업건설국장·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사회여성복지과장</u>----- ----- <u>가정복지담당</u>----- -----</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u>가정복지과장</u></p> <p>2. 기금출납원 : <u>가정복지계장</u></p> <p>② (생 략)</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p> <p>1. ----- : <u>사회여성복지과장</u></p> <p>2. ----- : <u>가정복지담당</u></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2조(구성) ① ~ ② (생 략)</p> <p>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u>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u>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행정지원국장,</u> ----- ----- ----- -----</p>

현행	개정안
<p>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기금운용관은 <u>총무국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p>	<p>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u>행정지원국장</u>----- -----</p>
<p>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u>총무국장</u> 2. (생략) ② (생략)</p>	<p>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등) ①----- ----- ----- 1. ----- : <u>행정지원국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u>이 된다.</p>	<p>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행정지원국장</u>이 된다.</p>
<p>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구성) ① ~ ②(생략) ③당연직 위원은 <u>총무국장</u>, 산업건 설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경제계· 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유통단 체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p>	<p>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행정지원국장</u>,-- ----- ----- -----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13조(유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총무국장</u></p> <p>3. ~ 10. (생략)</p> <p>⑤ (생략)</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u>총무국장</u>,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u>이 된다.</p> <p>③ (생략)</p>	<p>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13조(유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지원국장</u></p> <p>3. ~ 10.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 ----- --- <u>행정지원국장</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행정지원국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p> <p>제3조(조직 및 임기) ① ~ ③ (생략)</p> <p>④당연직 위원은 <u>세무과장·산업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건축과장·수도과장·지적과장이 된다</u></p> <p>⑤ (생략)</p>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p> <p>제3조(조직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u>세무과장·지적과장·농림과장·도시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u>-----</p> <p>⑤ (생략)</p>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3.16, 94.12.2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16>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3.16>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전문개정 97.2.4]